



제42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후임재판관 임명절차의 개시 시기 규정 등 〉

■ 김종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430호)

2025.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은 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후임재판관 임명절차의 개시 시기 규정	2
2.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등 이후 직무수행 근거 마련	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종민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1. 10.

(3) 회 부 일 : 2025. 1.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행법에 의하면,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명절차 지연 등으로 인한 헌법재판관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음.

헌법재판관 공백 상황 발생 시,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한 유효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바, 해당 논란과 갈등을 해소하고 헌법재판소의 안정적 운영으로 국민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대안 마련이 필요함.

이에 후임재판관 임명절차는 퇴임예정 재판관 퇴임 3개월 전에 개시하도록 하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 헌법재판관 공백을 최소화하여 헌법재판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안 제7조).

Ⅲ. 검토의견

1. 후임재판관 임명절차의 개시 시기 규정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에 있어 후임재판관 임명절차를 퇴임 3개월 전에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u><신설></u>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후임재판관 임명절차는 퇴임예정 재판관 퇴임 3개월 전에 개시하도록 한다.</u>

나. 현행법상 후임재판관 임명시한에 관한 규정

「대한민국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11조제2항), 9인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제111조제3항)¹⁾,

1)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후임재판관의 임명시한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한편,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에서는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제1항),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되,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되(제3항),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고(제4항),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함(제5항).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다. 검토의견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에 있어 후임재판관 임명절차를 퇴임예정 재판관 3개월 전에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임재판관의 임기 만료나 정년 도래에도 불구하고 후임재판관에 대한 임명절차가 지연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함에 개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같이 퇴임예정일 기준 3개월 전에 임명절차를 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 신임 재판관의 임명시기와 퇴임 재판관의 퇴임시기 간에 후보자가 될 자의 검증이나 논란 등에 대비한 시간적 여유를 두어 절차가 개시됨으로 인해 철저한 인사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고 동시에 재판관의 공백

사태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임²⁾³⁾.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명절차”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즉,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조에서는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고(제1항),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하고,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제2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 김선화, 『헌법재판관 공백방지를 위한 입법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2012. 11. 13. 8-9면.

3) 참고로, 스페인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재판관의 임기종료일 4개월 전에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새로운 재판관을 추천하여야 하는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추천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해외 입법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김선화, 『헌법재판관 공백방지를 위한 입법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2012. 11. 13. 8-9면 참조).

스페인 「헌법재판소법」 제17조제1항 헌법재판소장은 임기종료일 4개월 전에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새로운 재판관을 추천하여야 하는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추천을 요청한다.

Spain Organic Law 2/1979 on the Constitutional Court, OF 3 October 1979 Article 17

1. Four months before the date of expiry of the appointments, the President of the Court shall invite the Presidents of the bodies responsible for nominating new Judges to initiate the statutory procedure.

2. The Judg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shall remain in office until such time as their successors take up office.

(<http://www.tribunalconstitucional.es/en/tribunal/normasreguladoras/Lists/NormasRegPDF/LOTC-en.pdf>)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명절차”가 「헌법재판소법」 제6조에서 규정한 인사청문 요청을 의미하는 것인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고자 하는 신임 헌법재판관에 대한 내부 인사검증 등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은 후임재판관 임명절차를 퇴임 3개월 전에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후임재판관 임명절차를 퇴임예정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전에 개시하도록 의무화할 것인지, 임명절차 개시 시기를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 실효성 있게 제도가 운용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헌법재판소는 2014. 4. 24. 선고 2012헌마2(퇴임재판관후임자선출부작위위헌확인) 사건에서 헌법의 명문규정 또는 헌법해석상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간을 구체적으로 도출하기는 어렵고, 「헌법재판소법」 제6조제3항 내지 제5항은 공석이 된 재판관의 후임자 선출 기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항들은 ‘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피청구인인 국회가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간은 「헌법재판소법」 제6조제3항 내지 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 아니라 「헌법」 제27조, 제111조제2항 및 제3항의 입법취지, 공석인 재판관 후임자의 선출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한 ‘상당한

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국회는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이 된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2014. 4. 24. 선고 2012헌마2(퇴임재판관후임자선출부작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은 피청구인(국회)의 후임 재판관 선출 시한에 관하여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 재판관을 선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만약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 위와 같은 사유로 재판관이 공석이 된 경우에는 국회의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피청구인의 작위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다(제6조 제3항 내지 제5항). 위 헌법재판소법 조항들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이를 강행규정으로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법이 위 조항들을 위반한 피청구인의 재판관 선출행위를 무효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피청구인에 의한 재판관 후보자의 전문성 및 도덕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은 국가의 근본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 수호의 측면에서 필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들의 법적 성격은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일률적인 기간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법률에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여 가급적 신속하게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하도록 하기 위한 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피청구인에 의한 재판관 선출은 여야 간 정치적 협의를 통한 후보자의 선정 및 선정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을 통한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피청구인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이루어지고,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국회법 제46조의3, 인사청문회법 제6조 및 제9조 참조).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청구인이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간은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3항 내지 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 아니라, 앞서 본 헌법 제27조, 제111조 제2항 및 제3항의 입법취지, 공석인 재판관 후임자의 선출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한 '상당한 기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피청구인이 선출하여 임명된 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 피청구인은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이 된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안에서 규정한 “임명절차”에는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 전 국회에서의 인사청문 절차가 포함된다고 해석될 수 있는바, 퇴임예정일 기준 3개월 전에 임명절차를 개시한다고 하더라도 인사청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재판관 임명이 지연되는 문제는 여전히 발생할 여지가 있고, 관련 기간도 혼시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는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재판관의 임기 만료일 또는 정년 도래일의 일정 기간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⁴⁾이 계류 중에 있음.

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8346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9472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9480호)

2.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등 이후 직무수행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재판관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법이 정한 연임의 임기 기한은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7조제4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② (생략) <신설>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② (현행과 같음) ④ <u>재판관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법이 정한 연임의 임기 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u>

나. 현행법상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 등에 관한 규정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와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12조제1항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⁵⁾, 「헌법재판소법」 제7조제1항에서는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⁶⁾.

5) 「대한민국헌법」 제112조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년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헌법재판소법」 제7조제2항에서는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⁷⁾.

참고로, 대법관의 임기 및 정년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5조⁸⁾제2항에서는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조직법」 제45조⁹⁾에서는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고(제1항),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로 정하고 있음.

6) 「헌법재판소법」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7) 「헌법재판소법」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②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8) 「대한민국헌법」 제105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9) 「법원조직법」 제45조(임기·연임·정년)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⑤ 판사는 그 정년에 이른 날이 2월에서 7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7월 31일에, 8월에서 다음 해 1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1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다. 검토의견

개정안은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의 경우 그 연임의 임기 기한 한도 내에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조제3항¹⁰⁾에서는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아 재판관의 공백으로 헌법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¹¹⁾ 개정안은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전임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후임 헌법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전

10)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11)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2헌마2 결정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에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고, (중략) 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 국회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공적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임 헌법재판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9676호)이 2025. 4. 9.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¹²⁾으로 가결되어 2025. 4. 17. 본회의를 통과한 후 정부로 이송되었으나,

2025. 4. 29. 임기가 만료된 헌법재판관이 헌법에서 정한 임기를 넘어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의 헌법재판관 임기 규정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에 재의요구가 이루어진바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참고: 첨부 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서).

문 의 처
02)6788-5058

1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4인, 의안번호 제2209471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제2207212호)은 대안반영 폐기됨.

3. 후임 헌법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전임 헌법재판관이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헌법재판관의 임기 규정에 반합니다.

- 개정안 제7조제3항에서는 후임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 전임 헌법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헌법 제112조제1항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정해진 임기에 한정하여 헌법재판관 직무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임기제도를 통해 공직수행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헌법적 결단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러나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헌법재판관이 헌법에서 정한 임기를 넘어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헌법의 헌법재판관 임기 규정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 즉, 개정안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여하는 헌법기관이 의도적으로 후임 헌법재판관의 선출·지명 또는 임명을 지연시키더라도 기존 헌법재판관이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 임기제도의 근본 취지와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헌법정신에 반합니다.
 -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① 독일은 독일 기본법에 직접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와 임기 만료 후 예외적으로 계속 직무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두었고, ② 프랑스는 법률에 관련 규정이 있으나 헌법에 정해진 임기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위원회 위원이 임기 도중에 사임하려는 경우 후임 위원이 임명될 때 비로소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을 둔 것인바, 헌법재판관의 임기에 관한 우리 헌법 규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그리고 헌법재판관 외에 대법관, 감사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등 헌법에서 직접 임기를 정하고 있는 다른 헌법기관의 경우 후임자 임명 시점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사례가 없다는 점도 법체계의 통일성 관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결론

- 이와 같이 개정안은 통치구조 및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헌법 사항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한 것으로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거나 다른 내용을 정한 것이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위헌 논란이 있는바, 다시 한 번 신중한 논의를 거쳐 입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합니다.